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경험, 예방교육 경험, 신고 관련 지식, 아동학대 인식에 따른 방임 인식 수준의 차이

김은서, 이진우, 문하민, 홍진외*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Neglect According to Child Abuse Experience and Knowledge of Child Abuse Prevention and Reporting among Nursing Students

Eunseo Kim, Jinwoo Lee, Hamin Moon, Jineui Hong*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 신고 관련 지식수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방임 인식과의 관련성을 확인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아동학대 신고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학대(방임) 인식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r=152, p=.036$).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경우($\beta=.38, p=.038$), 초·중·고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알 경우($\beta=.208, p=.016$), 사회복지 시설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을 알 경우($\beta=.199, p=.042$) 방임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 지식이 높을수록 방임학대 인식도가 높아지며, 특정 문항들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되었을 때 아동학대를 적절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concerning child abuse, its prevention, and the level of knowledge of reporting. We further endeavor to determine the relevance of the perceptions of neglect among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ugust 2022 to January 2023. Our results reveal that the level of knowledge for reporting child abus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wareness of its neglect ($r = 152, p = 0.036$). Nursing students who were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demonstrated a higher level of awareness of neglect when they had knowledge about the legal obligation to report suspected cases of child abuse ($\beta = 0.38, p = 0.038$). Moreover, a higher level of neglect recognition was obtained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when they had prior knowledge about the obligation ($\beta = 0.208, p = 0.016$). Social welfare facility staff demonstrated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neglect when they were aware of obligation ($\beta = 0.199, p = 0.042$). The level of child abuse knowledge was found to be directly related to the awareness of neglect and abuse. During the survey, certain questions were found to be highly relevant to gain insight. We propose that these questio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educational content for nursing students.

Keywords : Child Neglect, Mandatory Reporting, Child Safety, Child Sexual Abuse, Child Emotional Abuse

*Corresponding Author : Jineui Hong(Gwangju Health Univ.)

Email: Hong@ghu.ac.kr

Received February 21, 2023

Accepted May 12, 2023

Revised March 31, 2023

Published May 31, 2023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 아동학대의 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구분된다[2]. 신체적 학대는 성인(보호자포함)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3]. 정서적 학대는 언어 또는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대표적으로 비난, 모욕, 위협행위 등이 있으며[4], 성 학대는 아동을 성적 착취, 성희롱을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다[5]. 또한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보호할 수 있음에도 보호하지 않아 위해에 노출되는 것과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공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6]. 이러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기억력 감퇴, 정보 용량 감소 등의 인지기능 손상, 정신병 발생, 비행행동을 경험하게 되며 사회적 후유증과 비용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하다[7,8].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학적이거나 신체적 상해를 가져오는 행동일 경우에만 심각한 수준의 학대라고 인식하지만, 어두워질 때까지 집을 혼자 보게 하는 등의 행동과 같은 방임을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9,10]. 그런 사이에 방임 아동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되거나, 영양 공급과 돌봄 등을 받지 못해서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릴수록 장애가 생기거나 정상적인 발달이 어려워진다[11]. 심지어 방임이 신체학대, 정서학대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이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12]. 방임의 경우는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는 87.4%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드러나기 쉽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12,13] 방임의 예방, 조기발견 등에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2021년, 전년에 대비 약 27.6%증가하여 총 53,932건을 나타냈다[12]. 신고가 증가한 이유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과 인식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14].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에 보고된 학대유형 중 방임이 75%로 가장 많았다[15]. 국가별로 인식정도가 다르고 정책 등의 차이로 직접적인 방임 유형인구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빈곤

으로 인해 아동의 기본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방임이 흔히 나타났다[16]. 저소득 국가의 경우 절대적인 빈곤 해결과 보육 등의 복지가 방임을 해소시킬 수 있지만 고소득국가에서는 부모의 인식과 가족의 관계의 문제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족중심의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국내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의무자에 의해 23,372건(44.9%)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 의료인의 비중은 549건(1.1%)에 불과했다[12]. 특히 의료인중 간호사는 다양한 보건의료 기관에서 학대당한 아동을 발견하고, 판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17,18]. 따라서 학대 피해아동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간호사는 학대받은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징후를 이해해야 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하며[19]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사중 37.1%가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 35.8%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19]. 따라서 간호사는 아동학대 사례 발견 및 조치능력을 향상시켜 발견율과 신고율을 높여야 한다.

결국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인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인식이란 아동학대 사례를 접했을 때 아동학대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아동학대 인식이 부족할수록 아동학대로 인지하지 못하며, 결국 낮은 신고의도로 이어진다[20]. 따라서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과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킨다면 장기적으로 간호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와 지식, 신고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21].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생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 신고 관련 지식수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방임 인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방임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가능한 요인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비 신고 의무자인 간호대생의 아동학대 방임 인식이 향상될 것이고 방임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 위함이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신고지식과 학대인식 정도를 확인한다.
- 2) 아동학대 경험 여부, 신고지식, 아동학대 인식도, 방임 인식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3) 아동학대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한다.

- 4) 아동학대 신고 지식 세부항목과 아동학대, 방임학대 인식도의 관계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경험, 예방교육 경험, 아동학대 신고지식과 아동학대 중 방임 인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 중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의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경험한 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한 자,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전국의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SNS와 학과 게시판에 게시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간호대학생에게 해당 연구에 관한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진행하였으며, 연구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다중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 계산 방법을 참고하여 G*Power 3.1 program에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을 입력하여 필요한 표본수를 90명을 산출하였다[22,23]. 응답자는 총 212명이었으며, 응답자 중 간호학 전공자가 아닌 20명을 제외한 192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학대 관련 경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경험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예', '아니요'로 답변하게 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경험은 아동기에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예', '아니요'로 확인하고 종류를 확인했다.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예', '아니요'로 확인 후 '있다면 종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2.3.2 아동학대 신고 지식

아동학대 신고 지식에 대한 질문으로 김수인[20]의 연구도구를 참고하여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3점 척도로 '맞다', '틀리다', '모른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정

답은 1점, 오답과 모른다는 0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총 12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687$ 이었다.

2.3.3 아동학대 인식

학대 사례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총 19 문항을 제작하였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청 아동학대 사례를 사용하고 교수의 감수를 통해 타당도를 높였다. 하부문항으로 방임학대, 성적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로 구분하였다. 응답은 학대여부를 판별함과 동시에 학대라고 생각할 경우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0점은 '학대가 아니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도록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0.677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 등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대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연구 목적과 방법, 기간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중단을 보장하고 아동기 학대 경험 관련 문항에서 불편감 등을 느낄 수 있으므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설문하고 대상자 스스로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연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설문 결과의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종료 후 모두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최종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설문에 연구 참여 동의를 한 경우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문의사항은 연구자의 이메일로 연락하도록 하고 수집된 자료는 개인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보관 및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에는 IBM SPSS/WIN 26 version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였고, 아동학대 신고 지식과 아동학대 인식도, 방임학대 인식도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인식도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신고 지식 세부항목과 아동학대, 방임학대 인식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선행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variable and scale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Overall Abuse awareness score | | |
|----------------------------------|------------|-------------|-------------------------------|--------|------|
| | | | M±SD | t | p |
| Total | | 192(100) | | | |
| Gender | Male | 32(16.7) | 8.289±1.114 | -2.119 | .035 |
| | Female | 160(83.3) | 8.715±1.023 | | |
| Grade | 1,2 | 87(45.3) | 8.734±1.061 | .416 | .679 |
| | 3,4 | 105(54.7) | 8.639±1.079 | | |
| Religion | no | 133(69.3) | 8.594±1.116 | -.999 | .319 |
| | yes | 59(30.7) | 8.758±0.871 | | |
| Past Child Abuse Victims | no | 168(87.5) | 8.639±1.066 | -.197 | .844 |
| | yes | 24(12.5) | 8.684±0.931 | | |
| Past witnessing child abuse | no | 130(67.7) | 8.580±1.079 | -1.230 | .220 |
| | yes | 62(32.3) | 8.779±0.973 | | |
|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 no | 38(19.8) | 8.486±0.907 | -1.042 | .299 |
| | yes | 154(80.2) | 8.683±1.079 | | |
| Scale | Categories | N(%) | | | |
| Abuse reporting knowledge score | (score) | 9.21±0.163 | | | |
| Abuse awareness score | neglect | 8.08±0.108 | | | |
| | sexual | 9.451±0.729 | | | |
| | physical | 8.902±0.066 | | | |
| | emotional | 8.093±0.146 | | | |
| | Overall | 8.664±0.075 | | | |

M=Mean; SD=Standard Deviation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연구변수)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총 대상자 수는 192명으로 성별은 남성이 32명(16.7%), 여성이 160명(83.3%)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연구대상자들 중 임상실습 경험 전(1~2학년)은 87명(45.3%), 임상실습 경험 후(3~4학년)는 105명(54.7%)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총 연구대상자 중 종교 없음이 133명(69.3%), 종교 있음은 59명(30.7%)으로 나타났다. 과거 아동학대 경험의 여부는 168명(87.5%)이 없다고 답하였고, 아동학대 목격 여부는 130명(67.7%)이 없다고 답하였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 여부는 38명(19.8%)이 없다고 답하였고, 154명(80.2%)가 있다고 답하였다. 아동학대 신고 지식의 평균 점수는 9.21점(±.163점)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인식 정도의 평균은 8.664점(±.075점)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본 경우,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성적학대 9.451점(±.729점), 신체적 학대 8.902점(±.066점), 정서적 학대 8.093점(±.146점), 방임 8.08점(±.108점)순으로 나타났다.

3.2 아동학대 신고 지식과 아동학대 인식도, 방임학대 인식도의 관계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 지식과 아동학대 인식도, 방임학대 인식도의 관계는 <Table 2>와 같다. 방임학대 인식도는 전반적인 아동학대 인식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926, p=.000$). 아동학대 신고 지식은 전반적인 아동학대 인식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97, p=.006$). 아동학대 신고 지식과 방임학대 인식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r=.152, p=.036$).

Table 2. Correlation between Overall abuse awareness, Neglect abuse awareness, Abuse reporting knowledge

| Variables | r(p) | | |
|------------------------------|-----------------|-----------------|---|
| | 1 | 2 | 3 |
| 1. Overall abuse awareness | 1 | | |
| 2. Neglect abuse awareness | .926 (0.000) | 1 | |
| 3. Abuse reporting knowledge | .197 (0.006) | .152 (0.036) | 1 |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abuse awareness

| Variable | B | S.E. | β | t | p | VIF |
|----------------------------------|-------|------|---------|--------|-------|-------|
| (Constant) | 6.732 | .557 | | 12.082 | .000 | |
| Grade | -.144 | .150 | -.068 | -.338 | .338 | 1.031 |
| Gender | .496 | .202 | .177 | 2.452 | .015* | 1.056 |
| Religion | .252 | .164 | .111 | 1.535 | .126 | 1.068 |
| Past Child Abuse Victims | -.017 | .231 | -.005 | -.073 | .942 | 1.068 |
| Past witnessing child abuse | .154 | .161 | .069 | .955 | .341 | 1.052 |
|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 .224 | .188 | .085 | 1.193 | .235 | 1.036 |
| Abuse reporting knowledge | .100 | .033 | .216 | 3.004 | .003* | 1.045 |

R²=0.093, Adj R²=0.058, F(p)=2.680(0.012), Durbin-Watson=1.957

Dummy variable(reference) : Gender(Male), Grade(1,2), Religion(no), Past Child Abuse Victims(no), Past witnessing child abuse(no),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no)

3.3 아동학대 인식도와 관련된 요인들

연구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도와 관련된 요인들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아동학대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77, p = .015$), 아동학대 신고 지식도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beta = .216, p = .003$). 학년, 종교의 유무, 과거 아동학대 경험의 여부, 아동학대 목격 경험의 여부,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여부는 아동학대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3.4 아동학대 신고 지식 세부항목에 따른 전반적 아동학대 인식도 및 방임학대 인식도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 지식 세부항목과 아동학대, 방임학대 인식도의 관계는 <Table 4>와 같으며, 문항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신고지식의 1번 항목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법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에 정답(그렇다)을 선택한 사람일수록 방임학대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beta = .38, p = .038$). 3번 항목인 '초·중·고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에 정답(그렇다)을 선택한 사람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 reporting knowledge details and abuse awareness

| Variable | Overall abuse awareness | | | | | | neglect abuse awareness | | | | | |
|----------|-------------------------|------|---------|--------|-------|-------|-------------------------|------|---------|--------|-------|-------|
| | B | S.E. | β | t | p | VIF | B | S.E. | β | t | p | VIF |
| (Const.) | 7.813 | .492 | | 15.893 | .000 | | 7.352 | .727 | | 10.117 | .000 | |
| 1 | .406 | .220 | .143 | 1.849 | .066 | 1.383 | .680 | .324 | .168 | 2.097 | .038* | 1.383 |
| 2 | -.601 | .307 | -.172 | -1.957 | .052 | 1.782 | -.677 | .454 | -.136 | -1.491 | .138 | 1.782 |
| 3 | 1.068 | .320 | .274 | 3.338 | .001* | 1.565 | 1.155 | .473 | .208 | 2.442 | .016 | 1.565 |
| 4 | -1.444 | .390 | -.307 | -3.701 | .000* | 1.593 | -1.774 | .577 | -.265 | -3.077 | .002* | 1.593 |
| 5 | .390 | .294 | .128 | 1.325 | .187 | 2.151 | .224 | .435 | .051 | .514 | .608 | 2.151 |
| 6 | .369 | .254 | .136 | 1.451 | .149 | 2.044 | .769 | .376 | .199 | 2.045 | .042 | 2.044 |
| 7 | .174 | .224 | .070 | .774 | .440 | 1.916 | .145 | .332 | .041 | .437 | .662 | 1.916 |
| 8 | -.001 | .152 | .000 | -.007 | .995 | 1.122 | -.069 | .224 | -.022 | -.309 | .758 | 1.122 |
| 9 | -.067 | .155 | -.032 | -.435 | .664 | 1.269 | -.042 | .229 | -.014 | -.183 | .855 | 1.269 |
| 10 | -.354 | .177 | -.153 | -1.996 | .048 | 1.364 | -.530 | .262 | -.161 | -2.023 | .045* | 1.364 |
| 11 | .382 | .233 | .131 | 1.642 | .102 | 1.473 | .137 | .344 | .033 | .397 | .692 | 1.473 |
| 12 | .292 | .180 | .117 | 1.624 | .106 | 1.208 | .470 | .265 | .133 | 1.769 | .079 | 1.208 |

R²=0.262, Adj R²=0.176, F(p)=3.039(0.000), Durbin-Watson=1.884

R²=0.205, Adj R²=0.112, F(p)=2.201(.004), Durbin-Watson=1.953

Adjusted variables of Gender, Grade, Religion, Past Child Abuse Victims, Past witnessing child abuse and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Dummy variable(reference): All abuse reporting knowledge(incorrect answer)

일수록 아동학대 인식도($\beta=.274, p=.001$)와 방임학대 인식도($\beta=.208, p=.016$) 모두 높게 나타났다. 4번 항목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에 오답 항목을 응답할수록 아동학대 인식도($\beta=-3.701, p=.000$)와 방임학대 인식도($\beta=-.265, p=.002$) 모두 높게 나타났다. 6번 항목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에 정답(그렇다)을 선택한 사람일수록 방임학대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beta=.199, p=.042$). 10번 항목인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할 경우, 법적으로 신고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고 보호된다.'에 오답 항목을 응답한 사람일수록 아동학대 인식도($\beta=-.153, p=.048$)와 방임학대 인식도($\beta=-.161, p=.045$) 모두 높게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지식이 예비신고의무자인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및 방임학대 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동학대 인식도는 성적학대 항목이 9.45점(± 7.3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 8.90점(± 0.66 점), 정서적 학대 8.09점(± 1.5 점), 방임 8.08점(± 1.1 점) 순으로 나타나 방임을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 비해 방임은 외상 등의 신체적 손상 드러나지 않는 점이[19]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시대, 문화 등에 따라 달라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24], 과거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의미하였지만 현재 아동학대는 소극적인 방임 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19]. 따라서 늦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방임 학대 시 나타나는 아동의 행동양상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25].

방임학대 인식도, 아동학대 신고 지식, 전반적인 아동학대 인식도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도가 증가하며, 방임학대 인식도 또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고의도 증진 교육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교육 전과 후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점수의 평균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19]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본다. 다만 신고지식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매개변수로서 아동학대 인식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20].

성별에 따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아동학대 인식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여성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가 남성보다 높은 결과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7]. 여성의 공감능력이 남성보다 높은 것과 관련이 있으며[26] 성인지 감수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7]. 결과적으로 남학생의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아동학대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지식이란 아동학대 관련법률 지식,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식이며[20] 신고지식이 높다는 것은 아동학대를 판별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고지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아지며[27], 결과적으로 신고 의도는 아동학대 신고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다[28]. 하지만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련 뉴스 등에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고 태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동학대 신고 지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28]. 따라서 아동학대 교육프로그램에 아동학대의 이해를 위한 지식뿐만 아니라 신고지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신고 지식 중에서 방임학대 인식과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1번('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법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3번('초·중·고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4번('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6번('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0번('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할 경우, 법적으로 신고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고 보호된다.') 항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임 학대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법적인 신고의무,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지,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여부를 변수에 포함했지만 아동학대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인식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29].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연구대상자가 동일한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에서 아동학대 관련 경험과 학대 예방교육이 신고지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 어린 시절의 학대경험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결과와는[30] 차이를 보인다. 학대 예방교육은 객관적으로 동일한 교육이 아닌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교육이기 때문에 신고지식과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혹은 응답자들이 경험한 학대 예방교육이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아 실제로 신고지식 수준을 향상 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한 예방교육관련 기억은 부정확할 수 있으며, 교육의 내용과 질 등에는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는 표준화된 교육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전향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요인들을 해석하였을 때 Adj R2값이 0.058로 도출되었다. 아동학대 신고 지식 세부항목과 아동학대, 방임학대 인식도의 관계를 보았을 때, Adj R2 값이 각각 0.176, 0.112로 도출되었다. Adj R2은 1에 가까울수록 변수간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고 여겨진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낮은 Adj R2 값은 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설명력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적절한 도구를 개발하고, 다양한 연구변수들 포함하고, 동일한 예방교육을 제공하여 반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설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광고, 홍보물, 인터넷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다양한 경로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결과에서도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준화되고 잘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변수에 포함하거나, 아동학대 전문가의 교육 또는 및 특강과 아동학대 관련 광고, 홍보물 등을 구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신고지식과 학대 인식도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교육 프로그램에 신고지식 향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해 개발해야 한다. 또한 추가 연구를 통해 신고지식 향상이 아동학대 방임 인식을 향상시키고 신고의도로 이어지는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언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

험 여부와 인식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한 선행 연구 및 논문이 부족한 가운데 그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인 것과 방임인식이 낮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예비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지식과 방임학대 인식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아동학대 신고 지식 포함된다면 방임학대 인식도가 높아지는 관련성을 확인했다. 예비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과정에 추가 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경험, 예방교육 경험, 신고 관련 지식에 따른 방임 인식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아동학대 지식이 높을수록 방임학대 인식도가 높아지며, 특정 문항들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학부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간호대생의 아동학대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높여야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간호사가 되었을 때 의료인으로서 아동학대 사례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 할 수 있길 바란다.

References

- [1]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Law of Child Welfare, Retrieved [Jan. 19, 2016].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22&efYd=20150928#0000> (accessed Jan. 31, 2023)
- [2] M. K. Jang, "A Cross-cultur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Social Anxiety: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6, No.5, pp.901-921, 2020. DOI: <https://doi.org/10.24159/joec.2020.26.5.901>
- [3] E. Y. Lee, Y. Y. Jeon, "Type of Child Abuse and Characteristic of Abused Child Represented in Picture Books About Child Abus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0, No.4, pp.1621-1636, Aug. 2019.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0.4.116>
- [4] S. I. Jeong, M. R. Park, "Industrial Promotion of Education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Elder

- Abuse Types.”,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Vol.1, No.1, pp.91-103, Jan. 2016.
DOI: <https://doi.org/10.21186/IPR.2016.1.1.091>
- [5] 20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National child abuse report[Internet]. Seoul: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9 [cited 2023 January 31].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0165 (accessed Jan. 31, 2023)
- [6] H. O. Bae., J. Y. Kang, “Repeat Types of Neglect and Correlat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5, No.1, pp.455-474, Mar. 2015.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5.35.1.455>
- [7] H. I. Go, S. B. Kim,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education, and intention to implement it on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social science research*, Vol.30, No.3, p331-349, Jul. 2019.
DOI: <http://dx.doi.org/10.16881/iss.2019.07.30.3.331>
- [8] S. J. Kim, J. Y. Lee, “The Factors Influenc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porting Intention and Behavior in Relation to Child Abus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34, No.3, p39-58, Jun. 2013.
DOI: <https://doi.org/10.5723/KJCS.2013.34.3.39>
- [9] S. Y. Jung, B. E. Park, “Prospective mandated child abuse reporters’ perception on child maltreatment and the differences from the Child Abuse & Maltreatment Korea report and media report”,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23, No.1, pp.43-63, Feb. 2019.
DOI: <http://doi.org/10.21459/kccr.2019.23.1.43>
- [10] Y. H. Gho, Y. H. Chung, “Child Abuse Recogni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Vol.38, No.2, pp85-96, May 2013.
DOI: <https://doi.org/10.5393/JAMCH.2013.38.2.085>
- [11] M. S. Cho, S. H. Chang, “A Study on the Policy Confrontation Plan for a Child Abuse Preven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Vol.23, No.4, pp189-216, Dec. 2014.
-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National child abuse report[Internet]. Seoul: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21 [cited 2022 August 31].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72765 (accessed Jan. 31, 2023)
- [13] S. H. Lee, M. K. Jang, K. O. Son, Y. R. Lee. “Definition of Chil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Reflect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ild Abuse Laws and Protection Procedures”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18, No.1, pp57-78, Jun. 2020.
DOI: <https://doi.org/10.35639/daehan.2020.18.1.57>
- [14] M. S. Kim, “Constructing an Improved Support System for Abused Childre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Oct. 2016 Available from:
https://nkis.re.kr/researchReport_view.do?otpld=KIH_ASA00049596 (accessed Jan. 31, 2023)
- [1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USDHHS]. Child maltreatment 2017. USDHHS, 2017 [cited 2023 Jan 31], Available From:
<https://www.acf.hhs.gov/cb/resource/child-maltreatment-2017> (accessed Jan. 31, 2023)
- [16] J. M. Kobulsky, H. Dubowitz, Y. Xu, “The global challenge of the neglect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Vol.110, Part.1, 104296, Dec. 2020.
DOI: <https://doi.org/10.1016/j.chiabu.2019.104296>
- [17] G. H. Ki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the intention of nursing students to report child abuse*, Ph.D thesis, Graduate School of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 [18] H. Y. Shin, S. J. Shin, “The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Moral Sensitivity on the Intention to Intervene in Elder Abuse”,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Vol.22, No.3, p271-280, Aug. 2020.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0.22.3.271>
- [19] Y. H. Kim, E. Y. Yun, N. Y. Lee, “A Servey on Perception of Child Abuse among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10, No2, p189-197, Jul. 2006.
<https://www.e-mch.org/journal/view.php?number=28>
- [20] S. I. Kim, G. Y. Gang, “The Effect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on the Reporting Intention of Preliminary Reporting Obliga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 Abuse Perception and Reporting Knowled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55, pp.373-400, Dec. 2017.
DOI: <https://doi.org/10.17997/SWRY.55.1.13>
- [21] K. M. Cho, E. J. Kim,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Intention to Report Cases of Child Abus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22, No.2, 145-152, Apr. 2016.
DOI: <http://dx.doi.org/10.4094/chnr.2016.22.2.145>
- [22] H. C. Kang, K. P. Yeon, S. T. Han., “A Review on the Use of Effect Size in Nursing Research”,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Vol.45, No.5, pp.641-649, Oct. 2015.
DOI: <https://doi.org/10.4040/jkan.2015.45.5.641>
- [23] E. M. Jeong, Y. J. Kim,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Nurses’ Knowledge of Child Abuse Reporting,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Moral Sensitivity on the Attitude toward Reporting Child Abus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8, No.3, pp.260-269, Dec. 2022.
DOI: <https://doi.org/10.22650/JKCNr.2022.28.3.260>
- [24] J. N. Lee. “New Definition on the Type of Child Abuse”, *The Justice*, Vol.166, pp.209-233, Jun. 2018.
DOI: <http://dx.doi.org/10.29305/tj.2018.06.166.209>

- [25] S. Y. Hong, M. H. Park., "A Study on the Perception on Child Abus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nd Barriers to Reporting among Nurses",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30, No.2, pp.236-246, Aug. 2016.
DOI: <https://doi.org/10.5932/JKPHN.2016.30.2.236>
- [26] H. K. Jo, S. A. Kim, "Moral Sensitivity, Empathy and Perceived Ethical Climate of Psychiatric Nurses Working in the National Mental Hospital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6, No.2, pp.204-215, Jun. 2017.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2.204>
- [27] S. Kang, S. J. Yu, "The Factors Influencing Early Childhood Teachers' Reporting Intention and Behavior in Relation to Child Abus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18, No.4, 145-165, Dec. 2014.
- [28] E. M. Jeong, Y. J. Kim,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Nurses' Knowledge of Child Abuse Reporting,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Moral Sensitivity on the Attitude toward Reporting Child Abus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8, No.3, pp.260-269, Dec. 2022.
DOI: <https://doi.org/10.22650/JKCN.2022.28.3.260>
- [29] M. R. Yang, "the aware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regarding the rights of the children and child abuse in children education institution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64, 2016.
- [30] O. H. Young,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hild Abuse and Factors Influencing Those Perception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24, No.2, pp.178-185, Apr. 2018.
DOI: <https://doi.org/10.4094/chnr.2018.24.2.178>

김 은 서(Eunseo Kim)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학부과정)

<관심분야>
간호교육

이 진 우(Jinwoo Lee)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학부과정)

<관심분야>
간호교육

문 하 민(Hamin Moon)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학부과정)

<관심분야>
간호교육

홍 진 의(Jineui Hong)

[정회원]



- 2019년 8월 :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21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수료)
- 2012년 1월 ~ 2021년 8월 : 한양대학교병원 간호사
- 2021년 9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빅데이터, 공중보건